

여비 규정

개정: 2024.02.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 비전임교원, 기간제근로자, 조교 등(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의 구분) 출장은 국내출장,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 국내출장은 공무로 국내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 국외출장은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① 여비는 국내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잡비의 3종으로 하며, 국외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잡비의 4종으로 한다.

② 교통비는 철도운임, 항공운임, 버스운임, 여객선운임, 차량운임으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수행상의 현저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한다.

제5조(일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를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수행상의 현저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6조(여비지급) ① 국내출장에 대한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에 대한 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3>의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표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여비계산 기준) 잡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에 따라, 식비는 식사횟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8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업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정액의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교직원 등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 정액중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 한하여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학교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 상 외출 또는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교직원 등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대회의 참석을 위해 개최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숙박비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개최지역의 범위는 개최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교직원 등이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총비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Business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총 비행시간이라 함은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유 항공 탑승시간을 포함한 비행시간을 말한다.

제9조(장기출장의 여비) 15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장기 출장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잡비를 감액 지급한다.

구분	초과 기간(일수)	정액대비 감액 비율	비고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장기체재 중 일시 국가·도시에 출장하는 경우 그 출장 기간은 미산입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 초과 시	16~30일째(15일)	10%	

도착한 다음 날부터 30일 초과 시	31~60일 째(30일)	20%	
도착한 다음 날부터 60일 초과 시	61일 이상	30%	

제10조(여비의 정산) 여비는 본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선지급하고 출장일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귀임 후 즉시 정산한다.

제11조(국내 및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개정) 총무관리처장은 물가상승에 준하여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칙) 총무관리처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별표1>국내여비 지급기준표

●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숙박비	잡비	교통비				
			철도운임	항공운임	버스운임	여객선 운임	차량운임
교무위원	120	80	특실	이코노미	우등	1등급	출발지(학교)- 목적지 기준 철도운임 지급
부교수이상, 과장이상	110	70	특실	이코노미	우등	2등급	
조교수, 강사, 계장, 비전임교원	100	60	일반실	이코노미	우등	2등급	
주임, 담당, 기간제근로자, 조교 등	90	55	일반실	이코노미	우등	2등급	

1. 숙박비 : 1박 기준이며, 주관기관(협의회 등)에서 숙박제공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잡 비 : 1일 기준으로 식비 및 현지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수도권 지역 내 숙박이 없는 출퇴근교육의 경우 잡비를 지급하지 않음)
 3.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1일 이내”的 출장은 공용외출로 신청
 4. 교통비 :
 - 항공운임은 제주도 출장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
 (단, 항공료가 철도운임(KTX/SRT 기준)보다 저렴할 경우 제주도 이외의 지역도 항공편 이용이 가능함)
 - 차량운임은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철도운임 지급

<별표2>국외여비 지급기준표

●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USD)

구분	등급(국가도시)	숙박비/1박	식비/1일	항공운임	잡비/1일
총장	가	481	196	First Class	75
	나	432	"	"	"
	다	243	154	"	"
	라	210	"	"	"
부총장	가	399	170	Business Class	65
	나	299	"	"	"
	다	195	140	"	"
	라	159	"	"	"
교무위원	가	292	130	Economic Class	55
	나	217	"	"	"
	다	150	105	"	"
	라	130	"	"	"
부교수 이상/ 과장 이상	가	233	120	Economic Class	50
	나	170	"	"	"
	다	130	95	"	"
	라	108	"	"	"
조교수/강사/계장/ 비전임교원	가	186	105	Economic Class	45
	나	147	"	"	"
	다	96	85	"	"
	라	80	"	"	"
주임/담당/ 기간제근로자/조교 등	가	165	95	Economic Class	40
	나	133	"	"	"
	다	82	75	"	"
	라	76	"	"	"

<별표3>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표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표

등급	지역	국가·도시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등급	아시아주·대양주 [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쿠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다'등급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아시아주·대양주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라'등급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아시아주·대양주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拉斯,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튜니지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